

# 공 보

**제678호 2019. 1. 3.(목)**

선 결	기관의 장

##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53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 3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8-158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7
- 거창군 고시 제2018-159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8
- 거창군 고시 제2019-1호 도로명주소 고시 ..... 9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8-1549호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
- 거창군 공고 제2019-3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18

거창군 공고 제2018-1550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 19

거창군 공고 제2018-1558호 거창군계획시설(한국승강대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0

회 감									
--------	--	--	--	--	--	--	--	--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거 창 군 수 구 인 모

---

2019년 1월 3일

거창군 규칙 제1253호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직근무자의 편성(제6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분	당직 사령	당직원	비고
본청	숙직	1명(6급)	2명	
	일직	1명(5~6급)	2명	
농업기술센터	일직·숙직		각 1명	
보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인구교육과	일직·숙직		각 1명	숙직: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수도사업소	일직·숙직		각 1명	
한마음도서관	일직·숙직		각 1명	숙직: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종합사회복지관	일직·숙직		각 1명	숙직: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거창박물관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거창사건사업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수송대관리사무소	일직·숙직		각 1명	
체육시설사업소	일직·숙직		각 1명	숙직: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u>거창청포원</u>	<u>일직·숙직</u>		<u>각 1명</u>	<u>숙직: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u>
거창읍	일직·숙직		각 1명	숙직: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면사무소	일직		1명	숙직 재택당직

#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가. 별표 당직근무자 편성란에 거창창포원 신설

1) 일직 : 60,000원

2) 숙직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 30,000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가. 일직 1명\*60천원\*116일 = 6,960천원

나. 숙직 1명\*30천원\*365일 = 10,950천원

## 4. 작 성 자

행정과장 신영수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8-66
----------	---------

제출연월일	2018. 12. 27.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거창창포원 개관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편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거창창포원 당직 신설(안 별표)

1) 일직

2) 숙직 : 22시까지 연장근무 후 재택당직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제5항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7,91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함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밭작물 재배)
2.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사업비 (천 원)	사 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구분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23-4	당초	9,685	2,658	(당초) 55,000	2017. 11. 27. ~ 2019. 7. 31.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길 16	김 선 곤
	변경	9,685	2,677	(변경) 46,000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8년 12월 31일

# 거 창 군 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과수원 조성(사과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사 업 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고제면 봉산리 산261-5	12,496m <sup>2</sup>	4,943m <sup>2</sup>	15,631천원	▶ 당초 : 2017. 8. 9. ~ 2018. 8. 8. ▶ 변경 : 2017. 8. 9. ~ 2019. 12. 31.	경남 거창군 고제면 와룡길 82-6	변 상 원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8년 12월 31일

# 거 창 군 수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길 276-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3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2길 37	2009-04-01	2018-12-19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두번째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710-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2길 12	2009-04-01	2018-12-19	양기,음기를 덧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467-1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길 69-26	2009-04-01	2018-12-19	마을 뒤에 대밭이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거리 1048-5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보해길 189	2009-04-01	2018-12-19	보해산이라는 산이름이 반영된 도로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고문 변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문 변호사의 금지행위와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고문 변호사 제도의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고문 변호사 위촉 제한 근거 신설(안 제2조제2항)
  - 나. 고문 변호사 임기 변경(안 제2조제3항)
  - 다. 이해충돌행위 금지 조항 신설(안 제4조)
  - 라. 해촉 조항 신설(안 제5조)
  - 마.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금액·시기 변경(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018. 12. 27. ~ 2019. 1. 16. / 20일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기획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라. 전화 055-940-3074, 팩스 055-940-3029, 이메일 kh8849@korea.kr

붙임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고문 변호사의 운영과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2명 이내의 거창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같은 고문 변호사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등)**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행정심판 사건(이하 “소송 등 사건”이라 한다)의 자문

2.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3.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등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고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 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대리할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 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고문 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하는 경우
3.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자문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
5.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고문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7. 군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 가. 불변기간 경과, 변론 불출석 등 불성실하게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
  - 나. 소송상대방과 담합한 경우
  - 다. 승소율이 저조한 경우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피소(고소·고발 등을 포함한다)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에는 총 2천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된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은 시행일 당시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사 건 실 적 부 ( 월 )

종 류	사 건 명	의뢰년월일	의뢰내용	회신년월일	회신내용	비 고
※ 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1. 02.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1. 02. ~ 2019. 01. 18.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정옥2 태양광발전소 ⇒ 정대석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283호)	발전소명	정옥2 태양광발전소	정대석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허 정 옥	박 경 속
	소 재 지	경남 거창군 남상면 월행로 224-120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촌1길 125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033, 1034, 산135-1 (토지 위)	
	설비용량	97.09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9. 12.	
	양수(예정)일	2019. 01. 02.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거창군 공고 제2018-1550호

##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4-249호(2014.07.10.)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보건소)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1.1. 2018년 12월 27일**

**1.2. 거 창 군 수**

**1.3.**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종류	명칭	위치	사업규모(m <sup>2</sup> )				최초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사업부지	건축면적	연면적		
공공 청사	공공청사 (보건소) 증축(치매 안심센터 건립)사업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6,859.3	6,859.3	1,818.02 - 기 존:1,635.84 -증축:18.18	3,578.89 - 기 존:3,101.19 -증축:477.7	경상남도 고시 제2014-249 호 (‘14.7.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보건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사업시행기간 : 2018. 04. 26. ~ 2018. 06. 30.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계획시설(한국승강대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92-465(1992.12.24.)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 (학교:한국승강기대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31.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4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학교:한국승강기대학)

○ 명 칭 : 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부지면적 : 56,525㎡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학교시설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40-1번지 일원	56,525	2,815	513,42	1,992.28	경고 제1992-465호 (1992.12.24.)	

다. 세부내용

구분	도면번호	건물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규모	비고
교기시 육본설	1	본관동	2,828.0	5.0	819.69	2,391.01	지상3층	당초 변경
	2	제1공학관	2,083.0	3.2	1,471.24	2,673.98	지상2층	
	3	제2공학관	1,826.0	3.8	1,565.73	3,945.97	지상3층	
	4	창조관	683.0	1.2	570.44	2,383.98	지하1층 지상4층	
	5	실습동	3,068.0	5.4	506.01 513.42	2,609.35 1,992.28	지상4층	금회시행
	6	도서관	2,802.0	5.0	1,395.63	4,698.36	지상4층	
	7	연구동	701.0	1.2	370.90	717.60	지상2층	
	8	에스컬레이터 실습동	545.0	1.0	371.28	371.28		
	소계			14,536.0	25.7	7,070.92 7,078.33	19,791.53 19,174.46	
지시 원설	9	복지후생관	1,381.0	2.4	725.53	1,724.03	지하1층 지상2층	
	10	기숙사	4,904.0	8.7	2,176.26	10,088.76		
	10-1	제1기숙사			1,382.5	4,060.50	지상3층	
	10-2	제2기숙사			793.76	6,028.26	지하1층 지상6층	
	11	민원실	93.0	0.2	33.93	33.93	지상1층	
	소계			6,378.0	11.3	2,935.72	11,846.72	
기시 타설	12	운동장	7,864.0	13.9				
	13	농구장	931.0	1.6				
	14	테니스장	1,421.0	2.5				
	15	광장	1,415.0	2.5				
	16	도로 주차장	14,129.0	25.0				
	소계			25,760.0	45.6			
녹지	17	녹지	9,851.0	17.4				
합계			56,525.0	100.0	10,006.64 10,014.05	31,638.25 31,021.18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대표 최 학 영

○ 성 명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 10. 30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815	2,815					
1	거창읍 송정리	540-1	답	2,255	2,255	거창읍 운정1길 120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2	“	538	전	364	364	거창읍 운정1길 120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3	“	541	전	60	60	거창읍 운정1길 120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4	“	540-2	구	136	136	거창읍 운정1길 120	학교법인한국 승강기대학			